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봉순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7년 9월 29일
-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3. 제정이유

- 건축물 및 공간조성사업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도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범죄예방 환경설계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기본원칙 (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안 제5조)
-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안 제6조)
- 범죄예방 적용대상 등 (안 제7조)
-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

5. 검토의견

- 금번 제정조례안은 경제적 성장에 따른 사회구조의 다변화와 범죄 발생 빈도의 증가로 인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도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생활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특히,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 인륜적 범죄” 등의 증가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관심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며, 범죄에 대한 안전 생활공간은 도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기본원칙 등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안 제3조(기본원칙)과 제4조(도지사의 책무)에서는 범죄 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과 도내에 안전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둘째,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셋째, 안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에서는 도지사로서 하여금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넷째, 안 제7조(적용대상 등)에서는 제6조에 따라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을 정하였으며,
 - 다섯째, 안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 여섯째, 안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와 제10조(교육 및 홍보)에서는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활성화 및 교육·홍보에 대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금번 제정조례안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준과 적용범위를 정하여,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됨.
 - 다만, 동 조례안 제7조 2항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의 건축위원회와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붙임 :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1부. 끝.

※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이하 셉테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개념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을 지칭하며,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 등을 통칭한다.

도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공간환경에서의 범죄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는 2005년 경찰청에서 처음 셉테드 도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적인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판교, 광교 등 신도시 개발계획과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계획 등에 셉테드 기법(낙후지역 벽화, CCTV설치 등)이 도입되었음.

셉테드는 건축물 설계 시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고, 공적인 장소임을 표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며, 이용자의 동선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일탈적인 접근으로부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를 짓고 주변에 낮은 나무 위주로 심어 시야를 확보하고 CCTV와 가로등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 지하주차장의 여성 전용 주차공간을 건물 출입문에 가깝게 배치하거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밖의 가스배관을 사람이 오를 수 없게 미끄러운 재질로 만들거나, 골목 등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엘리베이터를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설치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